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2-1391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2. 11. 18.(금) ~ 2022. 12. 07.(수)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건명,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하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사하구청 재무과(☎051-220-4147)

< 붙임 자료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단위:원)

현금종류	수납일자	고지번호	적 요	부서명	보관금액	**귀속금액**
보증금-입찰보증금	2017-03-23	2017-3340104-003293	세무1과-5139(17.3.23.) 관련 입찰보증금 납입	세무1과	2,961,560	**2,961,560**
합 계					2,961,560	**2,961,560**